

## 터어키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 -법제적 측면-

서재만

이 연구는 터어키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현행 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고찰한 것이다.

이 논문은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제1부는 연구의 취지와 목적, 대상과 방법을 밝히는 부분이고, 제2부는 터어키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온 법제의 경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고찰한 부분이다. 제3부는 터어키의 현행 법제에 나타나 있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고찰한 부분이다. 제4부는 위의 고찰을 기초로 오늘날 터어키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평가이다.

터어키는 현재 인구의 90% 이상이 모슬렘으로 흔히 이슬람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터어키는 이미 제1차세계대전 후 공화국으로 출범하였고, 근대화 개혁운동의 추진과 더불어 이슬람 샤리아법의 폐기와 이슬람 국교조항의 철폐로 일찌기 세속국가로 전환하였다. 이리하여 터어키는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는 여타 중동 이슬람국가들과는 달리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세속 공화국이다.

터어키는 정제(政體)의 변화와 함께, 종래 이슬람 전통 사회가 지니고 있던 여러가지 남성 우월주의적 불평등 법제를 폐기하고, 남녀평등적인 여러 새로운 법제의 도입으로 여성의 평등한 사회적 지위에 대한 법적 보장을 확고히 이루어 왔다. 터어키에서 공화국 이후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평등권 보장에는 특히 개혁을 주도한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영향력이 매우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터어키 여성의 사회적 평등성의 법적 보장은, 1926년 새 민법의 제정을 시초로하여 1934년 참정권의 부여로 확고해졌으며, 이후 끊임없는 개정과 새 법제의 도입으로 이제 적어도 법제적 측면에서는 거의 완벽한 남녀평등권이 보장되어 있다. 특히 참정권을 비롯한 공법상의 여성의 지위는 선진국형으로 충분한 평등권이 보장되어 있다. 남녀평등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제는 헌법을 비롯한 선거법, 민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형법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탈냉전 세계질서는 이른바 신사고에 의한 공존공영의 질서라고 운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의 신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세계는 오히려 치열한 경제전쟁에 돌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은 개발도상국과 국제협력을 불가피하게 그리고 시급히 요청하고 있다. 특히 일찌기 한국의 경

\* 이 글은 교육부주관 지역연구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한 것임.

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 한국-중동협력은 에너지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중동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중동지역의 현황에 대하여 소상하고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경제발전에서 노동력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최근 21세기를 향한 급속한 과학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고급 노동력의 수요는 날로 증가일로에 있다. 지구상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은 바로 이러한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그동안 선진국을 필두로 세계 곳곳에서 여성해방운동을 비롯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각종 운동들이 전개되어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가 점차 높아 가고 있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많은 곳에서 인식 부족과 더불어 비인도주의적인 낮은 인습이나 편협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여성들은 아직도 극심한 차별 속에 한갓 유희 노동력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중동지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국어대학교 부설 중동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한국-중동협력 증대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중동 이슬람 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를 장기연구과제로 선정하였다. 이 장기연구과제 가운데 우선 제1차년도(1992-93) 연구 대상으로 중동 이슬람지역 국가 가운데 가장 선진적인 터어키를, 그리고 구체적 과제로는 '터어키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선정하였다.

이 논문은, 제1차년도 연구과제인 '터어키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3편의 논문 가운데 하나로 '법제적 측면'을 다루기로 한다.

이 연구는, 법제적 면에서 터어키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현행 법제도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현행 법규집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논문은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제1부는 연구의 취지와 목적, 대상과 방법을 밝히는 부분이고, 제2부는 터어키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온 법제의 경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고찰한 부분이다. 제3부는 터어키의 현행 법제에 나타나 있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고찰한 부분이다. 제4부는 위의 고찰을 기초로 오늘날 터어키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평가로서 결론의 같음이다.

## II. 역사적 배경

법제적 측면에서 터어키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과정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오스만제국기와 공화국기이다. 이러한 구분은 이슬람 체제에 의한 오스만

1 이슬람(Islam)은 '평화' '순종' '복종'을 의미하는 'salima'라는 아랍어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신의 뜻에 순종하고 신의 법 즉 코란을 따른다'는 말이다. 이슬람의 전파에 따라 이슬람교도는 언어적(아

제국과 그후 공화제로 새로이 발족한 터어키 공화국 사이에는 체제의 변혁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오스만제국은 이미 18-9세기에 근대화 개혁 운동을 통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적지 않은 변혁을 겪었다. 그러나 공화국 이후 터어키는 칼리프제의 폐지로 이슬람체제를 청산하는 한편, 서구식 공화제의 채택과 더불어 서구화 개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오스만제국 시대의 근대화 운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하고 심층적인 변혁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도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법적 측면에서 꾸준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많은 새로운 법률의 도입과 끊임없는 개정을 가져와 오늘날의 매우 현대적인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 1. 오스만제국기 여성의 지위

터어키족은 9세기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왕들을 따라 대거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다. 이는 그들에게 새로운 종교적 믿음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 법적 변화를 동반하게 되었다. 환언하면 터어키인들은 이슬람으로의 개종과 더불어 샤리아이슬람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터어키의 여성들은 이슬람법에 따른 매우 엄격한 사회적 규율에 얽매이게 되었다.<sup>2</sup>

1517년 오스만제국은 이슬람 아랍지역의 통합과 아울러 칼리프권을 승계함으로써 명실공히 이슬람통합국가로 발전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슬람에서는 네가지의 법원(法源)을 가지고 있다. 즉 코란(Koran), 순나(Sunna:교조 모하멧의 언행록), 이즈마(Ijma:합의) 그리고 키야스(Qiyas:유추)이다. 이슬람국가에서는 이들 법원을 기초로 마련된 샤리아(Sharia)법을 유일한 법으로 준수한다. 이슬람은 상황에 따라 남성우월주의와 남녀평등주의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Topaloglu, 1988). 코란도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여, 어떤 부분에서는 강한 남성우위주의를, 또 어떤 대목에서는 남녀의 평등성을 일러주고 있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의 위에 있으니'(제2장 바까라 제28항 제228절), '두 여자 증인은 한 남자 증인에 대하니'(제282절), '남자의 몫은 두 여자의 몫과 같으니'(제4장 니싸아 제2항 제11절),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이니 ... 여성은 헌신적으로 남성을 따를 것 ... 순종하지 않는 여성을 때려주어라'(제34절) 등 대체로 코란에는 남성 우위의 귀절이 많으며 특히 일부사처제(니싸아 제1항 제3절)와 같은 매우 불평등한 대목도 있다.

랍어) 통일체를 이루는 동시에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통일체를 이루어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모든 인간사를 신의 뜻에 따르는 '움마'(umma)라는 통합된 교도공동체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이슬람이란 종교적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인간생활의 총체이며, 이슬람국가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는 제정일치를 넘어서 모든 인간생활을 포괄하는 움마통일체이다.

2 터어키인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이전에는 대체로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농업과 목축에 종사하는 반유목생활을 하였으며, 여성들은 비교적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가졌다(Afetinan, 1968:34-37). 이러한 남녀간의 평등성은 터어키족의 현존하는 최고의 전적인 오르혼(Orhon) 비석의 비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고 한다(Inan, M., 1991:94-95).

이와 같은 이슬람의 남성우월주의의 보편화로 인하여 오스만제국에서 터어키 여성들은 주로 가정에 갇혀진 가정경제 담당자였다. 특히 도시의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가정의 울타리에 제한된 생활을 영위하였고, 가정의 영역을 벗어난 사회 참여의 길이란 거의 막혀 있었다. 그러나 농촌의 여성들은 남성들과 함께 농업생산에 종사함으로써 경제적 노동력으로서 도시 여성들에 비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 참여를 하게 되었다.

도시의 여성 가운데 귀족을 비롯한 상류출신 여성들은, 일반 여성들과는 달리, 교육이나 이슬람의 덕목에<sup>3</sup> 따른 회사(zakat)를 통하여 사회 참여의 기회를 서서히 확장하여 갔다. 일찌기 오스만 터어키에서는 15세기 이후 여성 시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16세기에는 여성들의 도서관 설립운동도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오스만제국 말엽 근대화를 위한 개혁기를 맞아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매우 괄목할 만하였다. 18세기에는 대체로 터어키 여성들은 회사의 대상을 교육기관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18-19세기에 걸쳐 여성이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알려진 것만도 이스탄불에 무려 80여개나 되었다 한다(Afetinan, 1968:74-77). 이 무렵에는 여성 전용 교육기관이 설립되었고(1869), 남녀공학 학교도 설립되었으며, 특히 여성교사의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을 통한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매우 크게 신장되었다. 또한 1893년에는 ‘여성신문’의 발간이 있었고, 이어 1908년 ‘여성’, 1912년 ‘여성 정원’, ‘여성세계’와 ‘여성생활’, 1913년 ‘여성 감각’, ‘여성계’와 ‘여성적’, 1918년 ‘여성의 인생’, 1919년에는 ‘여성의 마음’ 등의 신문과 잡지들이 나왔다. 1867년에는 여성들에 의해 ‘상이군인 돕기회’(Cemiyeti İmdadiye)가 설립되었다.

제1차세계대전에서 터어키가 독일과 함께 추축국 대열에 가담하여 참전하였다가 패배함으로써 오스만 터어키는 연합국에 의해 강제 분할을 당하였고, 급기야는 아나톨리아 반도마저 강점되어 국가의 운명이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풍전동화의 위급한 상황에서 터어키는 무스타파 케말(Mustafa Kemal; 후에 터어키의 국부라는 뜻의 Atatürk 칭호를 받음)을 위시한 민족주의 세력의 지도로 이른바 독립전쟁(1919-22)에 돌입하였다. 이와 같은 국난을 당하여 터어키의 여성들은 전후방 전역에서 남성들과 나란히 많은 희생을 치루면서 국토방위와 조국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Inan, A. 1985; Tansel, 1988).

## 2. 공화국기 여성의 지위

주지하다시피 1923년 터어키 공화국의 수립은, 1919-22년 터어키 국민이 대연합국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가져 온 결과이다. 이 승전은 터어키의 남녀노소 온 국민의 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특히 이 기간 터어키 여성들의 국토방위와 조국재건을 위한 참여와 역할은 남성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볼 때 전혀 손색이 없었다고 평가되어 오고 있다(Tansel,

3 이슬람의 6대 임무는 ①신앙고백(EI-Shahada), ②예배(Salat), ③회사(Zakat), ④단식(Siyam), ⑤순례(Haji), ⑥성전(Jihad)이다.

1988). 1921년 3월 1일 당시 국방장관 레펫 장군(Refet Pasha)은 홍월회(우리나라의 적십자회와 같음) 콘야지부 연설에서 “아나톨리아 시골 부녀자들의 고귀하고 거룩한 희생정신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높이 기리고 언제나 마음 깊이 거듭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어느 민족에게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다”고 칭송하였고(Inan, R., 1991:14) 9월 13일자 독립전쟁 승전을 공식 발표하는 의회 연설에서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을 대표하여 온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실로 아기를 품에 안고서 달구지로 돕던 시골 아낙네들의 승리인 것입니다”(Taskiran, 1973:99)라는 대목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우위의 오랜 관습과 전통의 유산은 여전히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그후 터어키에 공화제가 정착된 후에도 한동안 여성의 사회적 평등권에 대한 법적 보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특히 평등권의 법적 보장의 기초가 되는 헌법에서조차 구태의연한 남성우위 원칙이 지배적이었다. 터어키는 이미 공화국으로 발족한 후인 1924년의 제3차 헌법에서도, 오스만제국 말엽 1876년에 제정된 제1차 헌법과 독립전쟁기인 1921년에 제정된 제2차 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참정권을 전혀 용인하지 않았다. 1924년 제3헌법 제10조는 ‘19세 이상의 모든 터어키 남성은 선거권을 갖는다’, 그리고 제11조는 ‘31세 이상의 모든 터어키 남성은 피선거권을 갖는다’(Giritli, 1969:34)고 규정하여 남성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하고, 여성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부인하여 전혀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단지 여성의 참정권 부인의 의미를 넘어서 여성의 터어키 국민권에 대한 부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1924년 헌법 제3조는, 이미 1921년 제2차 헌법 제1조를 그대로 옮겨, ‘주권은 무조건 국민의 것이다’라고(Giritli, 1969:27)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주권재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권재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행조건인 참정권을 제한받는 일은 곧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결여하게 되는 논리적 확장을 가져오게 된다. 다시 말하면 참정권을 부여받지 못한 여성들은 곧 국민으로서의 지위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의회의 1924년 헌법 초안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논리적 모순이 지적됨과 더불어 여성의 참정권 문제가 제기되어 심각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Taskiran, 1973:100-103). 그러나 심의 결과 여론은 여성의 참정권 문제를 추후로 미루기로 모아졌고, 남성의 참정권만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여성의 참정권 문제는 이에 앞서 1923년 의회의 선거법 개정과정에서도 심각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Taskiran, 1973:96-100). 그러나 여전히 보수적 종교주의자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던 당시의 의회는 여성의 참정권을 승인하리 만큼 여론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였다. 결국 의회의 의석을 규정한 대목에서 ‘2만명의 남성 인구’를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여성은 인구 산정에서도 고려되지 못하는 실로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듯 여성의 참정권을 완강히 거부하고 남성 우위주의에 안주하던 의회도, 공화국 수립 이후 끊임 없이 계속 추진되어 온 무스타파 케말의 진보적 개혁론에 밀려 서서히 변모하기 시작하였다.<sup>4</sup> 특히 무스타파 케말은 그의 개혁운동을 촉진시키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법제화를 중시하여 법치주의 원칙을 고수하였다(Cihan, 1981). 그는 끊임없이 개혁과 관련된 새로운 법의 제정과 개정을 단행하였는데, 1924년 3월 칼리프제 폐지에 관한 법, 1924년 4월 제3헌법, 1925년 십일조 농지세의 폐지에 관한 법, 1925년 교육기관 통합에 관한 법, 1925년 11월 전통 이슬람 의상의 폐지에 관한 법, 1925년 12월 서양력 채용에 관한 법, 1926년 샤리아법의 폐기에 관한 법과 새 민법의 제정, 1928년 헌법의 이슬람 국교조항 삭제, 1928년 5월 만국공용 수자 채용에 관한 법, 1928년 11월 문자개혁에 관한 법, 1930년 4월 지방자치법, 1934년 헌법의 총선 선거권 및 피선거권 조항 개정 등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다. 이러한 일련의 진보적 개혁 입법은 보수주의 세력의 후퇴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터어키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여러가지 법적 조치가 잇달아 나오게 되었다.

이 무렵 조국의 재건과 발전을 위하여 근대화 개혁운동에 전력을 쏟고 있던 무스타파 케말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평등권 보장에 관하여서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는 1923년 2월 13일자의 한 연설에서 ‘한 사회 집단의 남성과 여성 가운데 어느 일개의 성(즉 남성 또는 여성)만이 당대의 필요에 응한다면 그 사회집단은 절반의 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한 국민의 발전과 개화를 원한다면 특히 이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 사회의 낙후 원인은 여성에 대한 우리들의 무관심과 과오에서 연유한다’(Inan, R., 1991:41)라고, 또 다른 한 연설에서 ‘… 더 이상 염려하거나 의심할 나위 없이 보다 정직하게 우리들이 살아 갈 길이 있다. 위대한 터어키 여성을 지적, 도덕적, 사회적, 경제적 삶에 있어서 남성의 동반자로, 친구로, 협력자로 그리고 보호자로 삼는 길이다 …’(Ataturk, 1959: C. II, 150-151)라고 한 대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무스타파 케말의 여권신장에 대한 노력에 관하여, 미국인 교수 플로리는(Vera Elizabeth Flory) ‘예언자 모하멧의 여권에 관한 개혁의 종말은 바로 무스타파 케말의 출발점이었다. 즉 예언자가 멈춘 곳에서 그는 시작하였으며, 예언자가 설계한 남녀평등을 실현시킨 것이다’(Inan, R., 1991:20)고 평가하였다.

오늘날 터어키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들은 대부분 이 무렵에 제정되었다. 1926년 2월 17일자 법령 제743호 터어키민법으로 터어키 여성에게 가정에서 남성과의 평등권을 보장하였고, 1930년 4월 3일자 법령 제1580호 지방자치법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였으며, 그리고 1934년 12월 5일자 법령 제2598호로 여성의 국회의원 총선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헌법의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1924년 헌법 제10조 및 11조의 개정으로 남녀간 동등한 총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보장함으로써 터어키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의 참정권을 승인하였다. 헌법 제10조는 ‘19세 이상의 모든 터어키 남성은 선거권을 갖는다’, 그리고 제11조는 ‘31세 이상의 모든 터어키 남

4 무스타파 케말은 공화국 수립 이래 그의 15년간의 전 통치기간 중 근대화 개혁에 주력하였으며, 그가 표방한 케말주의(Kemalism)의 6대 이념인 공화주의(Republicanism), 민족주의(Nationalism), 인민주의(Populism), 국가주의(Etatism), 세속주의(Secularism), 개혁주의(Reformism)도 실은 오스만제국의 패망 이후 터어키 민족국가의 재건과 부흥을 위한 근대화 개혁에 목표를 두고 있다.

성은 피선거권을 갖는다'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연령을 19세에서 23세로 그리고 '남성' 대신에 '여성과 남성'으로 개정하였다(Elgin, 1985). 이로써 기본적으로 터어키 여성의 사회적 평등권의 법적 보장이 이루어진 셈이다.<sup>5</sup> 이후 수차례에 걸친 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른 헌법의 제정에서도 남녀평등권의 법적 보장은 하나의 전통으로 수호되어 왔다. 만민의 법적 평등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 Ⅲ. 현행 법제상 여성의 지위

여성의 신분과 지위에 관계되는 현행 법제로는, 먼저 모든 법의 모법인 헌법(Anayasa)이 있으며, 그 외에 민법, 노동법, 사회보장법과 형법 등이 있다. 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 1. 헌법상의 지위

주지하다시피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국가의 통치조직을 비롯하여 국민의 지위와 권리 그리고 의무, 나아가 국가의 기본정책 등과 관련한 다른 모든 법령의 근본이 되는 최고의 법이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제를 무엇보다 먼저 바로 이 헌법에서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터어키는 1923년 공화국으로 발족된 후, 수차례 걸친 헌법의 제정과 개정을 거쳤으며, 현행 헌법은 1982년에 새로 제정된 터어키 역사상 제5헌법이다.<sup>6</sup>

현행 헌법에서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조항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1부 가운데 법의 공평성을 규정한 제10조는 '누구나 언어, 인종, 피부색, 성별, 정치적 사상, 철학적 신념, 종교, 종파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 하며, 법률 앞에 평등하다. 어느 개인, 가족, 집단 또는 계층에게도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 한다. 국가기관 및 행정부는 모든 업무에서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률 앞에 모든 국민의 평등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특히 성 차별의 부인을 명시하고 있다.

제2부 제3장 '사회 경제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부분에서 제41조는 가정을 터어키 사회의 기초라고 명시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으며, 이어 '국가가 가정의 안녕과

5 터어키 여성의 의회진출 상황을 살펴보면, 1935년 제5대의회에 18명의 진출로 가장 많았고, 그 후 1939년 15명, 1943년 16명, 1946년 9명, 1950년 3명, 1954년 3명, 1958년 3명, 1961년 상원 2명, 하원 3명, 1965년 상원 3명, 하원 8명, 1969년 상원 3명, 하원 5명, 1973년 상원 3명, 하원 6명, 1977년 상원 3명, 하원 4명이다. 여성 장관의 등장은 1971년이 처음이며(Inan, R., 1991:18-19) 1993년에는 여성 수상이 등장하였다.

6 터어키의 헌정사는 1876년 제1헌법 제정에서 출발하여, 1921년 제2헌법, 1924년 제3헌법, 1961년 제4헌법을 거쳐 1982년 제5헌법에 이른다.

복지, 특히 모자(母子)의 보호와 더불어 가족계획의 교육과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기구를 설치한다'고 규정하여 가정을 바탕으로 한 여성의 보호에 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단지 가정 외적 사회적 참여와 가정에서의 해방으로만 인식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여성의 인간적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한 보편적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42조 '훈련과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부분에서는 특히 '남녀 모든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남녀의 평등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제 3장 제5절 '노동관계 규정' 가운데 '근로조건과 휴식 및 여가권'을 규정한 제50조는 '누구나 연령, 성별 그리고 능력상 부적절한 업종에서 근로를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 미성년자와 여성 그리고 지체부자유자 또는 정신박약자는 근로조건상 특별히 보호된다. 휴식은 근로자의 권리이다...'라고 규정하여, 남녀의 평등성 보다는 여성의 특수성을 오히려 더 크게 반영시키고 있다. 즉 '성별에 부적절한 노동'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어 남녀 평등의 입장이 아닌 오히려 남녀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노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보호 차원에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여성'을 '미성년자나 지체부자유자 및 정신박약자'와 함께 근로조건에 있어서 '보호되어야 할 존재'로 명시한 대목에서는 여성의 평등성이 아니라 보호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제4장 '정치적 권리와 의무' 가운데 참정권을 규정한 제67조는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와 국민투표에 참가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터키 공화국 초기에 여성을 '선거권이 없는 국민'으로 해석하였던 것과는 달리, 여성의 참정권은 1934년 헌법개정으로 보장된 이래 남성과 동일하게 보장되는 원칙으로 되어 있다. 정당 관계 규정인 제68조에서는 '... 정당은 ... 여성부, 청년부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차별을 만드는 부속 기구를 둘 수 없으며, 재단을 설립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이 '여성부'와 같은 차별적 특정 하부 조직을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열거한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명시된 규정들과는 달리, 즉 평등적 의미나 보호적 차원과 달리 여성의 정치적 남용 내지 악용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참정권 가운데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76조와 제101조는 완전한 남녀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제76조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연령의 제한을 30세 이상으로, 제101조 대통령 피선거권의 연령제한을 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남녀의 차별은 전혀 없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터키의 현행 헌법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한 어떠한 차별적 요소도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남녀 평등권은 거의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하겠다. 특히 터키 정부는 영국, 캐나다 등 몇몇 선진국과 같이 지난 6월 여성을 수상으로 기용하여, 여성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수상직은 대통령 유고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직을 대행하는 요직이다. 사실, 여성의 사회적 지



위에 대한 차별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선진국에서조차 국가안위에 관련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은 중요한 요직에는 여성의 임명을 묵시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볼 때, 터어키에서 여성 수상의 탄생은 매우 파격적인 개방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민법상의 지위

터어키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스위스 민법을 모방한 민법(Medeni Kanunu)이 1926년 4월 4일자 법령 제743호로 제정되었다. 그 후 14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듭하여 총 937개 조로 구성된 현행 민법은, 구 오스만제국법에 의한 일부다처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여성의 불평등 조항이 삭제 또는 개정되어, 기본적으로 여성의 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거의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다.

### (1) 일부일처제

이슬람의 오랜 전통적 제도인 일부다처제의 폐지는 터어키의 현행 법제도상 여성의 사회적 평등성을 명시하는 가장 중요한 조항의 하나이다. 따라서 일부일처제의 엄격한 준수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혹 일부일처제를 문란하게 할지도 모르는 모든 잠재적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민법 제112조 제1항은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혼례식을 올리는 시점에 기혼일 경우’ 이 혼인은 무효라고 규정하여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를 명시하고 있다. 만일 기혼일 자가 재혼을 원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또는 혼인 취소 판결에 의한 혼인 소멸을 반드시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3조). 또한 ‘실종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재혼을 원할 때에는 배우자의 실종 판결만으로는 혼인 할 수 없다’(민법 제94조)고 규정하여, 혼인의 해지 판결을 선결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실종자의 남편 또는 아내는 실종 판결과 동시에 혼인 해지를 요구하거나, 또는 실종 판결을 받아 주민등록판에 혼인 해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신고의 등재로 혼인 해지의 완전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민법 제94조). 게다가 ‘혼인은 성인 2명의 증인의 입회로 지방자치관청이나 또는 (마을)원로회에서, 지방자치기관의 장이나 또는 지방자치기관장이 지정한 혼인 담당관 또는 동장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서약되며, 혼인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지방자치관청 또는 원로회에 출두할 수 없을 만큼 심한 환자임이 의사의 진단서로 확인될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도 혼인은 서약될 수도 있다’(민법 제108조). ‘혼인 입회관은, 혼인 당사자 각각에게 상대방과 혼인을 원하는지 또는 불원하는지를 (공개적으로) 질문하며, 동의를 얻어 혼인이 양 당사자 각자의 동의로 법적으로 서약되었음을 선언한다’(민법 제109조). ‘혼인 입회관은 혼인식의 종료와 더불어 즉각 신랑과 신부에게 혼인신고서를 발급한다’(민법 제110조). 이와 같이 혼인식과 동시에 혼인 신고가 필하여지며, 이 혼인 신고 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슬람식 혼인식을 가질 수 없도록 제한

하고 있다(민법 제110조). 그러나 이슬람식 혼인식은 법정 혼인 성립의 필수요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에서는 오랜 이슬람 전통의 유습으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 보편화되어 있는 종교의식 혼인식 거행의 선행조건으로 혼인신고를 의무화하여 중혼의 철저한 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 위에 민법 제116조는 ‘아내 또는 남편이 있는 자와 혼인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혼인에 동의한다고 선서를 하였을 경우’ 혼인 취소 소송권을 보장하고 있어 이중삼중으로 일부일처제를 규제하고 그 폐해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즉 철저하게 일부일처제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부일처제와 관련된 엄격한 제법규를 통하여, 과거 관습화되어 있던 당사자 특히 신부의 의견이 무시된 채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하여 강요된 혼인은 완전히 배제되었다(Dogramaci, 1992:84).

### (2) 재혼과 여성의 대기

재혼을 원하는 자는 사별, 이혼 또는 혼인 취소 판결 등으로 혼인이 해지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민법 제93조), 실종자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실종판결과 더불어 혼인 해지 판결을 요함은(민법 제94조) 이미 앞에서 밝혔던 바이다. 이는 남녀에게 동일하다. 그러나 민법 제95조는 재혼을 원하는 여성에게만 차별적으로 일정한 대기 기간을 설정하여 두고 있다. 즉 ‘남편의 사망 또는 이혼을 사유로 혼인의 해지 판결을 받은 부인은 사망, 이혼 또는 혼인 해지의 판결 이후 300일이 경과하지 아니 하고는 재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기 보다 오히려 여성의 보호 조치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조항이 갖는 근본 취지는 여성을 혼의 임신으로부터 보호하고, 부계 혈통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Inal, 1992:54). 이러한 근본 취지는, ‘시간의 경과만으로 대기 기간은 종료된다. 부인이 임신의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이혼으로 헤어진 부부가 다시 재혼을 원할 경우에는 판사는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제95조의 다음 항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 (3) 성년(成年)의 남녀 차별

민법 제11조는 19세 이상을 성인이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성인의 규정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다. 그러나 민법 제88조는 혼인 허용 연령을 남성에게는 18세, 그리고 여성에게는 16세 이상으로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다.<sup>8</sup> 그런데 민법 제11조는 ‘혼인으로 개인은 성인이 된다’고 부가하고 있다. 즉 혼인을 통하여 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성인의 신분을

7 터키 공화국은 1928년 헌법에서 이슬람의 국교조항을 삭제하여 세속주의를 채택하였으나, 이후에도 국민들은 오랜 종교적 전통에 따라 일반적으로 법정 혼인식 이외에 별도의 이슬람식 혼인식을 갖는다.

8 1917년에 제정된 가족법(Aile Nizamnamesi)에 의하면 결혼 적령을 남자 10세, 여자 9세로 정하여 조혼을 장려하고 있다(Turk Siyasal Bilimler Dernegi, 1984:28, 주석 2).

지니게 되는데, 남여의 혼인 허용 적령기를 차등하여 규정함으로써 민법 제11조의 남녀 간의 동등한 성인 연령 규정과 모순을 가져오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혼인 허용 연령을 여성에게 하향 조정하여 혼인과 더불어는 여성의 성인 신분 취득이 남성 보다 이르게 된다. 이는 마치 여성에게 남성 보다 조기에 성인의 신분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우대적인 조치로 보이기 쉬우나 사실상 성인에게는 상응하는 권리와 함께 의무가 따르게 된다. 이러한 의무의 부과는 반드시 유익하다고만 해석될 수 없으며 적령기를 보다 조기로 조정함은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법적 성인의 연령 보다 조기에 혼인을 통한 성인 신분의 취득만으로는 실제로 법정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리 가운데 하나인 참정권의 허용 연령이 21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성인 규정 연령 19세는 물론이고 혼인을 통한 성인 신분 취득의 경우인 여성의 혼인 연령 16세(남성의 경우 18세)는 아무런 법적 권리의 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민법 제14조는 금치산자와 같이 미성년자의 민법적 권리 사용의 무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 성년연령에 앞선 조혼자가 법정 성인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여성의 혼인 연령 조기화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 내지 신장한다기 보다 오히려 여성에게 지나치게 조기에 부담을 지우는 면이 더 강하다는 논리적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듯 하다. 더우기 민법 제88조는 미성년 당사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16세 이상의 남성과 15세 이상의 여성에게도 판사의 판결에 의하여 혼인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혼의 문호를 더욱 넓혀 놓고 있는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의 조혼 허용 최저 연령이 남성의 그것과도 차이가 있으며, 이는 법정 성년 연령과의 간격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환언하면 여성의 차등적 조혼 허용은 남성에 대한 상대적 사회적 지위의 신장 또는 보장이라는 측면 보다는 오히려 그 역으로 이해될지 하다.

#### (4) 여성의 남편 성씨 사용

민법 제153조는 여성이 혼인 후에, 대체로 서양에서 그렇듯이, 남편의 성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부장제도의 남성우위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는 한 단면이라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터어키에서는 이혼한 여성의 권익 보호에는 남성 보다 관대한 법적 지원이 있다. 즉 민법 제141조에서, '여성이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을 하기 이전의 본래의 성씨를 다시 사용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덧붙여 '만일 이혼한 여성이 이혼하기 이전의 남편의 성씨를 사용함이 유익하고, 이것이 전 남편에게 유해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면, 이혼녀의 요청에 의해 판사가 전 남편의 성씨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남성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 허가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141조).

### (5) 이혼 청구권

이혼 청구권은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부여되어 있는 공통된 권리이다. 민법 제 129-134조에서 이혼의 사유로 간통(제129조), 부당한 대우(제130조), 수치와 불명예(제131조), 유기(제132조), 정신질환(제133조) 그리고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제134조)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사유도 역시 남녀에게 공히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로써 과거 이슬람체제에서 남성에게만 부여되었던 독점적 이혼권은 소멸된 것이다(Turk Sosyal Bilimler Dernegi, 1984:124-125).

민법 제129조는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각각 동등하게 이혼 청구권을 갖는다. 비록 형법상 간통죄의 구성요건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이 크게 다르나, 이혼 소송의 사유로서는 남녀의 혼외 부정행위는 동등하게 취급된다. 즉 남성의 경우 간통죄의 구성요건으로는 배우자 이외의 다른 여성과 일정 기간 부부처럼 동거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혼의 사유가 여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매우 엄격하여 단 1회의 혼외 성관계로서도 성립되기 때문이다(Inal, 1992:138-139). 또한 간통은 이혼 판결의 결정적 사유가 된다. 간통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을 경우, 굳이 부부관계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더우기 간통으로 인한 피고는, 원고가 자기보다 더 결점이 많다거나 또는 원고도 간통을 범하였다는 등 상대방의 부정에 대한 폭로성 주장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Inal, 1992:140). 그러나 민법 제129조 3항은 용서를 한 경우에는 이혼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2항은 남편 또는 아내가 이혼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간통이 발생한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이혼 청구 소송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위자료의 청구권

민법 제143조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하여 입은 실질적이거나 또는 개연적인 피해에 대해, 잘못이 없는 남편이나 아내는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 합당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제1항).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건이, 허물이 없는 남편이나 아내의 개인적 이익에 크게 손상을 입었다면, 법관은 정신적 보상 명의로 일정한 액수의 위자료 지불 판결을 내릴 수 있다(제2항). 또한 민법 제144조는, 이혼으로 빈곤에 처하게 될 배우자는 과오가 상대방보다 더 크지 않다는 조건하에서 재정능력에 따라 무기한으로 생계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생계비를 청구할 경우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에 반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생계비를 청구할 때에는 아내의 상태가 매우 부유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즉 남성보다 여성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이다.

(7) 자녀의 보호권

일반으로 자녀의 보호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갖는다(민법 제263조 제1항). 그러나 만일 보호자권 행사에 있어서 부모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아버지의 의사가 우선한다(제2항). 예를 들면,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성인의 허가 판결을 받고자 부모의 승인을 필요로 할 경우(민법 제12조) 부모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위의 민법 제263조 2항과 같이 아버지의 의사가 우선한다. 그러나 법정 성년 연령을 채우지 못한 미성년자가 혼인허가를 얻고자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할 경우, 부모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도 충분하다(제90조). 즉 민법 제263조 2항과 같이 아버지의 의사가 우선하지 아니 한다.

이혼 또는 별거하는 부부는 자녀에 대한 보호권을 공동으로 갖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판사가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 보호권을 부여하게 되는데, 부모와 자녀간의 개인적 관계에 따라 결정한다(민법 제148조). 대체로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부부는 자기 자녀에 대한 보호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보복감의 발로이거나 또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지불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보호권을 이용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은 자녀의 이익, 보호, 성장 그리고 건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영아나 유아(乳兒) 또는 유아(幼兒)에 대한 보호권은 어머니에게 부여하는데, 이런 소아(小兒)들에게는 어머니의 보호나 사랑이 크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 자녀들의 보호자 선택에는 명시된 규정이 없다. 다만 법원이 보다 합당한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도록(민법 제148조)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어디까지나 당해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린다. 비록 부모가 상호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은 자녀의 이익과 보호에 기초하게 된다. 여기에는 물론 성의 차별이 없으며, 심지어 이혼 청구권자(원고)와 피고(사유를 발생시킨 장본인) 사이에도 아무런 차별이 없다. 나쁜 배우자가 반드시 나쁜 아버지나 나쁜 어머니가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부인의 간통이 이혼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터어키의 현행 법은 자녀의 보호권을 어머니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대체로 어린이들에게는 모성애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보호권은 아버지 보다 어머니에게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8) 상속권

터어키에서 상속권상 남녀의 지위는 동등하다. 민법에 의하면, 상속인의 순위에 있어 제1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민법 제439조), 제2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제1대 존속이며(민법 제440조), 제3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제2대 존속으로(민법 제441조)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존비속의 상속에 있어서 각 순위내 남녀의 차별은 전혀 없으며, 모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는 다음의 몇가지로 상속 조건이 나누어진다. 첫째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될 경우에는 상속 재산의 1/4을(민법 제444조 1항), 둘째 피상속인의 직계 제1대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될 경우에는 상속 재산의 1/2을(제2항), 셋째 피상속인의 직계 제2대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될 경우에는 상속 재산의 3/4을(제3항) 소유한다. 만일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직계 제1, 2대 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전 상속 재산이 배우자에게 상속된다(제4항). 여기에서도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 보다 상위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을 뿐 남녀 차별이나 구별은 전혀 없다. 이와 같이 흔히 가부장제도의 유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속상의 남녀 차별 규정은 터키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 3. 노동법상의 지위

법령 제1475호 노동법(Is Yasasi)은 남녀평등을 비롯하여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는 여러가지 우대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자(母子) 보호적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Turk Sosyal Bilimler Dernegi, 1984:166-168).

#### (1) 휴가권

노동법 제41조 b항은, '본인의 결혼시에는 3일간, 그리고 부모나 배우자, 또는 형제나 자녀의 사망시에는 2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규정하여 여성 근로자에게 남성 근로자와 동등한 휴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은 여성 근로자를 우대하는 여러가지 휴가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노동법 제70조에 의하면, 여성 근로자는 출산을 전후하여 각 6주씩 총 12주간 유급휴가를 갖게 되며, 근로자의 건강 상태나 작업의 특성에 따라 출산 전이나 후에도 의사의 진단서가 명시한 기간 동안 휴가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을 전후로 한 유급휴가기간은 노동법 제51조의 연간 유급휴가기간으로 산입한다. 또 여성 근로자가 원한다면, 출산을 한 6주 후 다시 6개월간의 무급 휴가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노동법 제70조는, 출산을 전후한 12주 내에 있는 여성 근로자의 사용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여성 근로자의 출산을 전후한 휴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 (2) 모자보호(母子保護)

노동법은 특히 모자(母子) 보호적 차원의 규정들을 두고 있다. 노동법 제62조 d항은, "수유기(授乳期)에 있는 자녀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수유시간(授乳時間)을 일정 기간 동안 법정 일일(一日) 근로시간에 산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임부 및 수유부를 고용할 수 없는 직종을 명시하고, 고용할 수 있는 직종의 경우 수유실이나 탁아소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고용 조건과 방법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0명 이상 300명 이

내의 여성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업장에는 수유실, 300명 이상의 여성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에서는 만6세까지의 유아를 위한 탁아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 탁아소를 작업장에서부터 250미터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3) 여성근로자의 보호

노동법 제68조에 의하면, 광산, 전선매설(電線埋設), 운하 및 터널 건설 공사 등 지하 또는 수중 공사 작업에는 여성 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동법 제69조에서는 공산품 제조업의 야간 작업에도 여성 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여성 근로자를 위험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78조에 의하면, '중노동 및 위험노동 규약'(Agir ve Tehlikeli Isler Tuzugu)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 직업교육 기관의 교육을 마치고 동종의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는 중노동 및 위험 노동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종전에 남성에 의해 독점되었던 특수 전문직의 문호를 여성 근로자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 4. 사회보장법상의 지위

헌법 제6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 사회보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터어키에 설치된 여러가지 기구 가운데 '퇴직연금공단'(Emekli Sandigi)과 '사회보험공단'(Sosyal Sigorta Kurumu)이 있다. 법령 제5434호 퇴직연금법(Emekli Sandigi Yasasi) 제68조에 의하면, 과부 및 고아 등 생활 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조월급이 있으며(Turk Sosyal Bilimler Dernegi, 1984:168), 법령 제506호 사회보험법(Sosyal Sigortalar Yasasi) 제43-46조에 의하면, 여성 보험 가입자이거나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인 미가입 부인이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게 될 때에도 국가로부터 진찰, 치료, 출산, 수유 등의 도움을 받게 된다(Turk Sosyal Bilimler Dernegi, 1984:169).

## 5. 형법상의 지위

1926년 3월 1일자로 제정되어 그 후 무려 43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쳐 현재 총 590여 개조로 구성된 형법(Ceza Kanunu)은 기본적으로는 만민의 법적 평등주의를 원칙으로 남녀평등권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간통죄 조항에서는 여전히 남녀간의 심각한 차별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

### (1) 간통죄

형법 제440-444조는 간통죄에 관한 규정이다. 터어키에서는 배우자를 가진 자가 배우

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성 관계를 간통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혼 청구의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29조). 그러나 형법상 간통죄의 구성요건에 있어서는 남녀가 크게 다르다. 여성의 간통죄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440조는 단 1회의 혼외 성관계로도 간통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Inal, 1992:138-139) 매우 엄격하다. 이에 반하여 남성의 간통죄에 관한 규정인 제441조는 간통죄의 구성 요건으로 '부인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또는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방식으로 다른 곳에서 부부처럼 지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를 취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남성의 간통죄는 부인 이외의 다른 여성과 일정 기간 부부처럼 동거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단 1회의 간통만으로도 간통죄를 구성하는 매우 불평등한 규정이다(Nihan and Cekirge, 1992:24). 이는 과거 윤리적 면에서 여성에 대하여 엄격성을 요구하던 남성 우위주의적 관습의 한 유산이라고 지적될 수 있다.

남녀의 간통에 관한 이러한 불평등 차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여성은 단 한번의 성관계로서도 임신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그리고 여성의 혼외 임신은 부계 성씨의 문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데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Turk Sosyal Bilimler Dernegi, 1984:159). 일반 사회적 통념상 부계 성씨의 문란은 남편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로 간주되나, 남편의 간통이 아내에게 끼치는 피해가 남편의 불명예에 비교될 만큼 심각하다고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매우 불균형적인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간통죄 구성에서 남녀간의 차별과는 달리, 간통죄의 형량에 있어서는 남녀 공히 6개월에서 3년으로 동일하다. 이와 같은 남녀에 대한 동일 형량의 규정도 1984년 12월 형법 제441조의 개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Ucok, 1985:202-204).

## (2) 여성수(女性囚)의 수감

여성에 대하여 오히려 관대한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는 대체로 여성 보호적 차원의 규정이다. 즉 실형을 선고받은 장기수에서 단기수에 이르는 여성 수인들에게는 형무소 보다 나은 환경의 감화원 또는 구치소와 같은 곳으로 수감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3조에 의하면, 여성은 판결받은 중장기 징역형을 여성 전용 형무소에서 복무할 수 있으며, 법관의 재량에 따라 여성수를 형무소가 아닌 감화원이나 구치소에서 수형생활 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IV. 맺는 말

터어키는 현재 인구의 90% 이상이 모슬렘으로 흔히 이슬람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터어키는 이미 제1차세계대전 후 공화국으로 출범하였고, 근대화 개혁운동의 추진과 더불어 이슬람 샤리아법의 폐기와 이슬람 국교조항의 철폐로 일찌기 세속국가로 전환



하였다. 이리하여 터어키는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는 여타 중동 이슬람국가들과는 달리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세속공화국이다.

터어키는 정체(政體)의 변화와 함께, 종래 이슬람 전통 사회가 지니고 있던 남성우월주의적 여러가지 불평등 법제를 폐기하고, 남녀평등적인 여러 새로운 법제의 도입으로 여성의 평등한 사회적 지위에 대한 법적 보장을 확고히 이루어 갔다. 터어키에서 공화국 이후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평등권 보장에는 특히 개혁을 주도한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영향력이 매우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터어키 여성의 사회적 평등성의 법적 보장은, 1926년 새 민법의 제정을 시초로하여 1934년 참정권의 부여로 확고해졌으며, 이후 끊임없는 개정과 새 법제의 도입으로 이제 적어도 법제적 측면에서는 거의 완벽한 남녀평등권이 보장되어 있다. 특히 참정권을 비롯한 공법상의 여성의 지위는 선진국형으로 충분한 평등권이 보장되어 있다. 남녀 평등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제는 헌법을 비롯한 선거법, 민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형법 등이다.

### 〈참 고 문 헌〉

Abadan-Unat, Nermin

1981 "Ataturk'un Kadın Devrim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taturk Proceedings*, Vol. I, Istanbul: Bogazici Universitesi.

Afetinan, A.

1968 *Ataturk ve Türk Kadın Haklarının Kazanılması: Tarih Boyunca Türk Kadının Hak ve Gorevleri*. Istanbul: Milli Egitim Basimevi.

Afetinan, A.

1982 *Tarih Boyunca Türk Kadının Hak ve Gorevleri*. Istanbul: Milli Egitim Basimevi.

Ali, Muhammad

1934 *Translation of the Holy Quran*. Lahre: Ahmadiyya Anjuman-i-Ishaat-i-Islam

Altindal, Aytunc

1991 *Turkiye'de Kadın*. Istanbul: Anahtar Kitaplar Yayınevi

Arat, Necla

1992 *Turkiye'de Kadın Olgusu*. Istanbul: Say Dagitim Ltd, Sti.

Arsel, İlhan

1991 *Seriat ve Kadın*. Istanbul: Kurtis Matbaasi.

Ataturk, Gazi Mustafa Kemal

1959 *Ataturk'un Soylev ve Demeçleri II*. Ankara: Turk Inkilap Tarihi Enstitüsü.

Çagdas Yasami Destekleme Dernegi

1991 *Kadınlar ve Siyasal Yasam: Esit Hak-Esit Katılım*. Istanbul: Cem Yayınevi

Cihan, Erol

- 1981 "Ataturk Hukuk Devrimi Uzerin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taturk Proceedings*, Vol. I, Istanbul: Bogazici Universitesi.
- Dogramaci, Emel  
1981 "Ataturk Inkilaplarinin Turk Toplumsal Gelismesindeki Etkileri: 'Ataturk ve Turk Kadin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taturk Proceedings*, Vol. I, Istanbul: Bogazici Universitesi.
- Dogramaci, Emel  
1992 *Turkiye'de Kadının Dunu ve Bugunu*, Ankara: Turkiye Is Bankasi.
- Elgin, Neriman  
1985 *Turk Kadınına Secme ve Secilme Hakki Taniyan 5.12.1934 Tarihli ve 2598 Sayili Kanun ve T.B.M.M. Tutanaklari*. Ankara: Turk Tarih Kurumu Basimevi.
- Erdurak, Yilmaz Gungor  
1991 *Ictihatli Turk Ceza Kanunu*. Ankara: Feryal Matbaacilik San. ve Tic. Ltd. Sti.
- Giritli, Ismet  
1969 *Fifty Years of Turkish Political Development 1919-1969*. Istanbul: Fakulteler Matbaasi.
- Inal, Nihat  
1992 *Notlu - Ictihatli Turk Medeni Kanunu Borclar Kanunu*. Ankara: Yetkin Basimevi.
- Inan, Afet  
1985 *Kurtulus Savasinda Turk Kadini*. Ankara: Turk Tarih Kurumu Basimevi.
- Inan, M. Rauf  
1991 *Ataturk ve Turk Kadini ve Tarihte Turk Kadini*. Istanbul: Arkin Kitabevi.
- Milli Guvenlik Konseyi Genel Sekreterligi  
1982 *Turkiye Cumhuriyeti Anayasasi*. Ankara: Turk Tarih Kurumu Basimevi.
- Nihan, Sevilay and Pinar Cekirge  
1992 *MarjinalKadinlar*. Istanbul: Altin Kitaplar
- Prime Ministry Directorate General of Press and Information  
1982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urkey*. Ankara: Basari Matbaacilik Sanayi.
- Taskiran, Tezer  
1972 *Cumhuriyetin 50. Yilinda Turk Kadin Haklari*. Ankara: Basbakanlik Basimevi.
- Tekeli, Sirin  
1982 *Kadinlar ve Siyasal - Toplumsal Hayat*. Istanbul: Birikim Yayinlari.
- Topaloglu, Bekir,  
1988 *Islamda Kadin*. Istanbul: Yagmur Yayınevi.
- Turk Sosyal Bilimler Dernegi  
1984 *Turkiye'de Ailenin Degisimi: Yasal Acidan Incelemeler*. Ankara: May Matbaacilik Yayıncılık Ltd. Sti.

Ucok, Bahriye

1985 *Ataturk'un Izind Bir Arpa Boyu*. Ankara: Turk Tarih Kurumu Basimevi.

A Study on Social Status of Women in Turkey:  
With the Focus on the Legal Institutions

Jae-Mahn Suh

This thesis titled 'A Study on Social Status of Women in Turkey: With the Focus on the Legal Institutions' was written as a part of the first-year(1992-3) research program of the long term research project of the Institute of the Middle East Studies, HUFS, under the subject of "Women's Social Position in the Middle Eastern Islamic Countries." It especially deals with the legal aspects of women's status in Turkey. It is concerned with Turkish women's social position in legal terms through contemporary law, so its focus is primarily on the philological study of legal documents.

This report is consisted of four parts; in the first part, it manifests the purpose and motive of this research and presents its objects and methods. And the second part is concerned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legal processes to improve women's rights in Turkey. In the third part, it deals more specifically with the present social status of women in the modern Turkish law. As the conclusion of these previous studies, the last part deals with women's social status in the modern Turkish society on its legal aspects.

서재만, 한국외국어대학교 터어키어과 교수

주소 : (110-521)서울 종로구 명륜동 1가 33의 6

Tel : 961-4160(O), 762-1708(H)

Fax : 960-7898(O), 762-1708(H)